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739
-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11명)
- 발 의 일 : 2025년 5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최근 증가하는 주취자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신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4월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보호조치통합지원센터’ 개소 하면서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
- 이와 주취자 보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신설해 보호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강조하고, 주취자 보호설치 및 운영 시,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3. 주요내용

- 가. 주취자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의2).
- 나. 주취자 보호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나. 입법예고(2025.6.3. ~ 6.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주취자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취자 보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인권 침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의2) 등을 통하여 주취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조의2(기본원칙)	–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신설)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 가족, 친척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제1항제3호 신설)

- 주취자 보호는 주취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되는 시민들의 거부감과 인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은 조례의 제정 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2022년 38,507건에서 2023년 48,433건, 2024년 67,227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2024년에는 일일 평균 184.2건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있는 상황으로,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에 단순주취자를 각종 사고·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경찰의 부담 해소를 통해 경찰이 치안 활동에 집중하여 사회질서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

〈 서울경찰청 주취자 관련 112신고 현황(2021년~2024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33,215	38,507	48,433	67,227
일 평균	91.0	105.5	132.7	184.2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5월 3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기본원칙은 목적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규정을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목적규정(제1조) 바로 다음 조문에 두도록 하고 있는바,¹⁾ 개정안은 정의규정(제2조) 다음으로 기본원칙(안 제2조의2 신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규정 다음으로 조문 위치(안 제2조의2 → 수정 안 제1조의2)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법제처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기본이념규정의 제목은 “(기본원칙)”, “(기본방향)”, “(교육이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본이념)”으로 쓰기로 한다고 하고 있음(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89면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조의2(기본이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현행과 같음)	

1)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89면 참조.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u>제2조의2(기본원칙)</u>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항제3호는 주취자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취자의 안전한 귀가 등을 위하여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청의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서²⁾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② ③ (생략)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 ----- ----- ----- -----. 1. 2. (생략)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5. (생략) ② ③ (생략)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024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2024년 1월, 20면 참조.